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<붙임>

# 2017년 농협재단 후계자육성장학생 신규선발 및 지원 계획

## 1. 지원 자격 :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농업계열 전공 대학 재학생 (2~4학년)

※ 제출서류 통해 농업인(그 자녀) 여부 최종 확인

- ▶ 다음 ①, ②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
  - ① 2017년 현재 국내소재 농업계열전공 대학 재학생 (2~4학년)으로 전공필수과목(전공선택 합산가능) 10학점 이상 이수한 자
  - ② 재학 중인 대학 학과장 추천서 (영농활동계획서 첨부, 소정 서식) 제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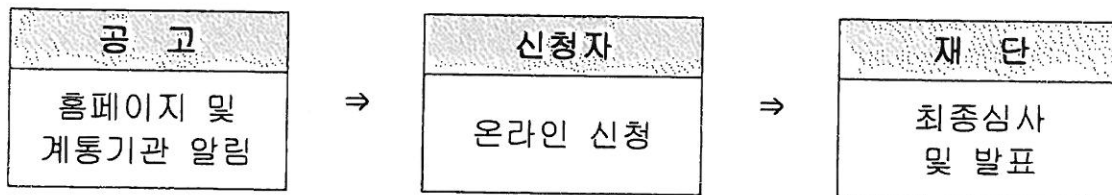
### □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가 아닌 자

○ 농협중앙회, 농·축협, 농협지주,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지배 하고 있는 관계회사(계열사)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

※ 고소득 계약직 직원(연봉 5,000만원 이상) 포함

## 2. 선발 인원 : 총 50명

## 3. 선발 절차



### □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

○ 신청서는 인터넷상(재단 홈페이지)에서 작성하며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- 마감일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제출 저장 기준
- 신청서류 기재시(인터넷작성)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#### 4. 주요 지원내용

- 1학기당 등록금 실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지원
- 성적 일정기준 유지시 정규수업연한 동안 지원
  - 농업인후계자육성장학금 -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80점 이상인자

#### 5. 선발 및 지급 일정

구분	농업인후계자육성장학생
서류 제출	2017. 1. 9(월) ~ 1. 26(목)
합격자 발표	2017. 2. 1(수)
합격자 서류징구	2017. 2. 1(수) ~ 2. 17(금)
장학금 지급	- 일자 : '17. 3월중(추후 확정 및 공지) - 방법 : 본인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처리

#### 6. 제출서류

구분	구비서류	부수	비고
농업인 후계자 육성 장학금	○ 지원 신청서 (자기소개서 포함)	1부	재단 홈페이지
	○ 조합원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※주1, 2, 5)	1부	둘 중 1개만 제출
	○ 주민등록등본 (농업인과의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	1부	둘 중 1개만 제출
	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소정 양식
	○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(군입대 및 휴학으로 인해 2016년도 1년간 성적이 없을 경우 마지막 2개 학기 성적 으로 평가) ※주3)	1부	1개 학기 성적만 존재할 경우, 지원 불가
	○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증명서 (2017년 휴학예정자는 신청 불가 / 2017년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)	1부	
	○ 영농활동계획서 (소정 양식)	1부	학과장 확인 필수
	○ 재학중인 대학교 학과장 추천서 (소정 양식)	1부	학과장 확인 필수
	○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※주4, 5	1부	해당학생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- 주1)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·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
- 2)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(사무소장)이 발급한 것을 말함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(1644-8778)
  - "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"와 "농지원부"는 "농업인 확인서"를 대체할 수 없음
- 3) 성적증명서에 전공필수, 전공선택 필히 표기
  - (전산시스템에서 미표기 출력될 경우 학교 교무처(직인 날인) 통한 수기확인 필수)
- 4) "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"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시도지사(군수, 구청장)가 발급한 것을 말함
- 5) 농업인확인서 및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는 2016년10월1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
- 6)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
  - 주민등록번호가 모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7자리를 지우고 제출
- 7)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

### 7. 선발기준 및 심사

☐ 농업인후계자육성장학금 : ①, ② 항목의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

- ① 직전 2개 학기 평균 성적
  - (1개 학기 성적만 존재할 경우, 지원 불가)
- ② 『후계농업경영인(舊 영농후계자)확인서』 제출자 50% 가점 부여
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시도지사(군수, 구청장) 명의의 확인서 발급

♣ 지자체에서(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별 인원배정) 최종 선정하는 『후계농업경영인』 선정 시 확인서 발급 가능

☐ 동점자 처리 기준

- 1순위 : 학업 성적이 높은 자
- 2순위 : 생년월일이 빠른 자

☐ 농업계열전형 합격자 중 추후 대학 재학 기간 중 해당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시점 이후로 장학생 자격 박탈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## 8. 합격자 발표 및 후속조치

- 합격자 발표(예정)
  - 일 자
    - 농업인후계자육성장학생 : '17. 2. 1(수)
  - 방 법 : 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- 합격자 안내사항
  - 필요서류 징구
    - 대학 등록금 납입서
    - 장학금 입금계좌 사본
  -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
- 장학금 지급
  - 일자 : '17. 3월중(추후 확정 및 공지)
  - 방법 : 본인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처리

## 9. 참고 및 유의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
- 조손가정은 조부모(또는 외조부모) 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면 자격인정
- 농협 임직원 자녀라 함은 농협중앙회, 농·축협, 농협지주,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(계열사)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
  - ※ 고소득 계약직 직원(연봉 5,000만원 이상) 포함
-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며 인터넷출력분을 포함한 원본 제출이 원칙
  -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(사무소장)이,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·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을 제출
    -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신청 후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,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발급이 용이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○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(해당 학생)는 해당 지자체 (시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

※ 농업인확인서 및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는 2016년10월1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

-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제출
  - 제출서류 발급 신청 시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신청
  - 주민등록번호가 모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7자리를 지우고 제출

□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합격자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,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

□ 신청서류 기재시(인터넷작성)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신규 선발된 학생은 농협재단 인재육성장학생 관리규정 및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,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연도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및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

- <붙임>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영농활동계획서        | 1부     |
| 2. 학과장추천서         | 1부     |
|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1부. 끝. |